

선 람	기 관 의 장

제1066호 2019. 4. 19.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노티나무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44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2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361호 삼척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5
- 삼척시 공고 제366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39
- 삼척시 공고 제367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40
- 삼척시 공고 제373호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3
- 삼척시 공고 제379호 삼척시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 53
- 삼척시 노곡면 공고 제3호 도로의 지정 공고 ----- 54
- 삼척시 근덕면 공고 제15호 도로의 지정 공고 ----- 55

공 람									
--------	--	--	--	--	--	--	--	--	--

발행 : 문화공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삼척시 고시 제2019 - 44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4. 19.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고무릉길 238의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 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4. 1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고무릉리 252-2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고무릉길 238	20190419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2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금계리 296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심방금계길 897-41	20190419		20090626	지역지명(심방,금계) 복합 활용
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초곡리 19, 17-3, 20-3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초곡길 227	20190419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주소	건수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고무릉리 252-2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고무릉길 238	3건	20190419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부여	2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금계리 296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심방금계길 897-41		20190419		20090626	지역지명(심방,금계)복합 활용	
부여	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초곡리 19, 17-3, 20-3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초곡길 227		20190419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삼척시 공고 제2019 - 361호

삼척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삼척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4월 16일

삼척시장

1. 개정이유

‘18.12.24 신설·개정된 「지방세기본법」 제76조~제86조(세무조사관련조항)를 반영하고, 국세 및 우수자치단체의 제도, 지방자치단체간 용어 정비 등을 포함한 행정안전부의 기본규칙안에 따라 현행 불합리한 규칙을 정비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법적안정성·예측성 강화를 위한 규정을 명문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일반, 특별 등 세무조사의 방식에 따른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
- 나.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안 제11조)
- 다. 중복세무조사관련 쟁송 등 고려 대안 규정 정비(안 제13조)
- 라. 자치단체별 기본형식 및 용어 통일(안 제14조)
- 마. 납세자권리현장 낭독, 조사사유, 조사기간 및 구제절차 설명(안 제34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삼척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주 소 : (25914)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세무과]

- 전화번호 : 033-570-3287

- 팩스번호 : 033-570-3134

- 이 메 일 : misukid@korea.kr

5.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 자치행정국 세무과(☎ 033-570-328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개정 규칙안은 「삼척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서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의견서

- 조례명 : 삼척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 성명(단체명) :
- 주소 :
-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삼척시 규칙 제 호

삼척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삼척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삼척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하여 조사계획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조사공무원”이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특정납세의무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
3.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일반세무조사”란 특정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정 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이하 “과세 적정성”이라 한다)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5. “특별세무조사”란 세금을 탈루한 방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세무조사의 방법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 6. "직접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지점, 제조장, 직매장, 하차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그 관련이 있는 자 등을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 7. "서면세무조사"란 직접세무조사 이외에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 등으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 8. "전부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세무조사대상이 되는 기간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 9. "부분세무조사"란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 10. "전산분석"이란 지방세원의 관리를 위하여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상황, 신고 내용 등 보유·관리하는 전산자료와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수집하는 과세자료 등에 대한 전산분석 등을 통하여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납세자의무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야 하고, 이를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4. 납세의무자별 구분조사 원칙: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조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① 세무조사는 지방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이 수행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1. 2개 이상 시·군과 연관된 자
- 2. 최근 10억원 이상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 3. 최근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 받은 자
- 4.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① 납세자 주소지와 사업장이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은 조사 시작 전 또는 조사 진행 중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간 내에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제7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하여 지방세관계법 등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조사대상의 선정

제8조(조사대상자 선정) 조사대상자는 지방세에 관한 신고, 납세의 성실도 및 업종 등을 기준으로 일반조사대상자와 특별조사대상자로 구분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9조(선정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 유지)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자의 성실신고 존중) 시장은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 ① 시장은 해당 납세자의 세원종합관리상황과 서면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반세무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직접세무조사 대상은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 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정기선정 대상 건수가 3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관련 지방세심의위원회 진행은 위원이 세무조사대상자를 식별 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한다.

③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로 관할이 이전되었으나 제1항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시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한다.

④ 시장은 일반세무조사 시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2.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법인 또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상인 경우
3. 1억원 이상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4. 1백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받은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방지, 신고납부 풍토조성, 경제·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사대상을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특별세무조사 대상자) ①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는 탈세정보자료에 따라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자로 하되, 그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납부, 담배의 제조·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5. 지방세관계법과 관련된 관례·지침·유권해석 등의 변경으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일반세무조사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③ 시장은 제2항의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탈루유형,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계획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3조(부분세무조사 대상자) 부분세무조사 대상자는 세원의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 검증으로 조사목적 달성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96조제5항(같은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위장·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14조(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최근 5년간 3억원 미만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우수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다만, 최근 5년간 3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당 법인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이 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의 시공을 하는 경우
 3. 법인의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

제3장 세무조사 실시

제15조(중복조사금지) ① 동일한 납세자의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해서는 아니되며, 조사시작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시장은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한 납세자에 대하여 전부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세무조사를 받은 부분은 조사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을 미리 정하고 조사공무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①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법 제76조제3항의 납세자보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세목 등과 관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방법) 세무조사는 조사대상자의 납세성실도 수준, 사업규모, 업종, 과세자료 분석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직접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납세자가 보관, 기록하고 있는 장부 및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전산조직으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조사와 그 장부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각종 현황조사, 거래처 또는 현장조사
2. 서면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로 지방세의 납부 또는 과세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
3. 부분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지방세원의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의 일부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

제19조(조사장소의 한정) 세무조사는 납세의무자의 주소·거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해당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조사시간의 제한) 세무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납세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구가 있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 사전통지 생략이유 등을 기재한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 ① 제21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제지 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1.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 2.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기간
- 3.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사유
-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조사기간) 시장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사기간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제24조(조사기간의 계산) 조사기간은 조사시작일(최종 자료제출일부터 기산한다) 부터 조사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조사기간 중 토요일·공휴일 등을 포함한다.

제25조(조사기간 연장의 제한) 시장은 세무조사를 시작한 후 기한 내에 법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26조(수색, 압수 등의 금지) ①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납세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압수·영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범칙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발견한 경우
 - 2. 비밀장부 등 범칙증거를 발견한 경우
-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조사공무원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로 전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압수·영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압수·영치증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압수·영치목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장부, 서류 등의 예치) ①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탈루혐의에 대한 증거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장부·서류 등을 예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예치증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예치목록을 내주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장부·서류 등의 예치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조사권남용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방법이 아닌 조사편의 등의 수단으로 조사권을 남용한 조사공무원과 조사책임자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① 조사대상 납세의 무자 및 그와 관련된 자에 대한 조사권의 행사는 해당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

- ② 납세자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조사사무관리

제30조(조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업무량과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일 납세자에게 중복조사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1조(조사준비) 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의 시작에 앞서 활용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분석, 검토하여 조사대상자에 대한 문제점과 중점조사 사항을 도출하여 조사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 신고납부 내용
- 2. 전산분석 자료
- 3. 행정기관 자료
- 4. 그 밖의 정보 및 수집자료 등

②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준비조사서를 작성하고,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사책임자는 효과적인 조사업무가 진행되도록 미리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2조(부분세무조사의 실시) ① 시장은 납세자의 편의 및 조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4.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33조(조사지휘) ① 모든 세무조사는 조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책임자가 장기간 조사지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조사책임자가 된다.

제34조(조사의 시작 등)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현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낭독해 주어야 하는 납세자권리현장의 요지와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35조(조사내용 보고) 조사공무원은 조사한 사항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조사진행관리) ①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조사책임자의 지시사항을 빠짐없이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을 서면으로 복명하여야 한다.

② 세무조사의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선정된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앞으로 조사할 사항과 새로운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선정된 조사대상이 서면조사서 등 자료제출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④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서류를 확보하고,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여야 한다.

제37조(조사의 종결)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종결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조사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38조(세무조사 결과통지)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결과를 확정하였을 때에는 조사결과를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대상 기간 및 세목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 및 산출근거
 3. 법 제49조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4.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세징수법」 제22조에 따른 납기 전 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사결과를 통지하려는 날부터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3.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폐업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4.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5.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및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
 6.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제39조(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 ① 조사과정에서 파악되는 각종 과세정보는 "과세자료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세자료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시장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조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조사기법사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 관리) ① 시장은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현황·조사연혁 및 폐업사실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② 조사공무원은 중복 세무조사 방지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대상자
 2. 세무조사 기간·내용·추징세액·추징사유·불복내용 등
 3. 납세자별, 세목별 세무조사 결과 대장 관리 등 기타 필요한 업무
- ③ 시장은 세무조사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최적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41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①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시장이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전출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표를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별표의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무조사의 유예)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를 면제받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면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사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부서		세무과
입 안 자	부서장	세무과장 민병노
	담 당	세무조사담당 김재권
	담당자	지방세무주사 심미숙 (033-570-3287)

[별표]

조사공무원 행동수칙

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 1)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 2) 조사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재정수입 조달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 4) 조사공무원은 세정의 최일선 역군으로서 지방공무원의 거울이 됨을 명심하고 조사에 임하여서는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며 항상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와 존대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 5)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 6) 조사공무원은 관련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무리하게 확대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 7)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법률에 정하여진 경우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8)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불의와도 타협해서는 아니되며 조사착수전, 조사진행중, 조사종결후 그 어느때에도 식·음료 등 일체의 향응을 제공받거나 고품수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조사착수 전에 지켜야 할 사항

- 1)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분석하는 등 준비조사에 철저를 하여야 한다.
- 2)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등 관련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 3) 관리자는 조사공무원에게 조사출장전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4) 조사공무원은 소정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출장에 임하여야 한다.

3. 조사를 시작할 때 지켜야 할 사항

- 1) 조사공무원은 조사처에 도착 즉시 조사착수 상황, 연락처등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 세무조사를 착수할 때에는 조사원증을 제시하고 지방세 납세자권리현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및 범위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 3)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으로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 사실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지휘에 따라야 한다.

4. 조사진행중에 지켜야 할 사항

- 1) 조사공무원은 조사업무 수행중에 조사목적에 벗어난 사적 편의 제공을 일체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주택이나 사업장 또는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조사현장에서 발견된 비밀장부나 주요 증빙서류를 납세자로부터 임의 제시 받았을 경우에는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관할 수 있다.

-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에 의한 조사방법·조사범위·조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조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 4) 조사내용에 대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자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조사현장에서 그 옳고 그름을 다투어서는 아니된다.
- 5) 조사내용의 이견에 대하여 납세자측의 주장이 옳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해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6) 조사공무원은 다툼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관련증빙을 확인하여 납세자의 불복청구나 쟁송에 대비하여야 한다.
- 7) 조사공무원은 매일의 조사를 마치면서 납세자의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해야 하며, 다음 조사일자를 명확히 예고하되 약속일시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납세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8) 조사공무원은 매일의 조사내용을 관리자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앞으로의 조사방향을 지시 받아야 한다.
- 9) 조사공무원은 조사와 관련하여 대내외로부터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조사를 마칠 때 지켜야 할 사항

- 1)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마칠때에는 납세자에게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알리고, 조사기간동안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여 준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여야 한다.
- 2) 조사공무원은 조사중에 제출받은 조사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를 납세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와 증빙의 반환으로 과세에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납세자의 동의하에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다.
- 3) 조사공무원은 조사종결 즉시 종결복명을 하고,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4) 조사공무원은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전까지 조사적출내용등 조사진행사항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 5) 납세자가 조사내용의 통지를 받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어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6)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과세자료 또는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도상의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에는 세법 등 개정 건의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7) 납세자가 권리행사(불복청구, 기타 세법에 의하여 납세자가 갖는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영치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삼척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첨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영치합니다.

영치사유						
영치기관						
영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영치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입회인	소속		직		성명	
서명날인 또는 거부사유						

년 월 일

삼척시장

직인

[별지 제2호서식]

영치목록

일련번호	물건명	수량	제출자	소유자	비고

[별지 제3호서식]

예치증

소재지(사업장) :

법인명(상 호)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위 업체에 대한 특별조사와 관련하여 별첨 목록의 서류 등을 조사기간 동안 삼척시에 정히 예치합니다.

소속 :

직급 :

성명 :

(인)

삼척시장

[별지 제4호서식]

예치목록

일련번호	물건명	수량	제출자	소유자	비고

[별지 제5호서식]

지방세 서면조사서

(지방세 납세자권리현장 재중)

범인유형		주요 목적사업
○ 범인명 : (인)	제 조 업 ()	
○ 대표자 :	건 설 업 ()	
○ 범인소재지 :	판 매 업 ()	
○ 사업년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개년도)	운 송 업 ()	
○ 작성자	기 타 ()	
- 근무부서 :		
- 성 명 : (인) / (☎) (fax)		
○ 대리작성인		
- 세무사(공인회계사) : / (☎) (fax)		
○ 제출일자 : 년 월 일		

삼척시장 귀하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이 조사서는 범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매 장마다 원본 대조필을 날인한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빈 조사는 서면신고에 의한 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대해서는 첨부서류만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하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V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연도별 작성 [조사대상기간이 3년이면 사업연도별(3개년) 각각 작성] 및 각 서식 작성 시 삼척시 전체분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작성된 신고서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경우에는 삼척시청 홈페이지 세무과 자료실에 “지방세 서면조사서(서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하셔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 작성 후 보낼 곳 :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세무과(세무조사부서)
우편번호 : 25914

※ 문의사항 전화 : 삼척시청 세무과(세무조사부서) (033) 570-3287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

○ 첨부하여야 할 서류(건설업, 제조업, 기타법인 모두 해당)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본점 및 각 지점사업장) ▣ 대차대조표(재정상태표) ▣ 손익계산서 ▣ 주식이동상황명세서 ▣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 유형고정자산명세서 ▣ 총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 계정별 원장 및 보조장 ▣ 계정과목별 보조장부 미체출시에는 검토가 불가능함으로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람
제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사업연도별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장별 신고내역서 ▣ 법인세 과세표준액 및 세액신고서 ▣ 사업장별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내역서
선택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법인인 경우 : 임대계약서 ▣ 건설법인 :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서, 공사원가명세서(현장별) ▣ 건설법인, 임대법인 : 재고자산 중 토지, 건물 계정별 원장

※ 첨부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서 식 목 차

1. 법인소유자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관련 증감명세서
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3. 주민세 (재산분) 신고 명세서
4.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

※ 서식 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작성요령

-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에 대한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 : 「지방세법」 제89조(납세지 등) 참조
- 매월별 작성하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또는 원천징수소득세 예수금장부 등에 의거 작성

① 소득세 구분란 : 월별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에 기재된 소득구분별 원천징수한 금액 기재

기 타 : “예” 인정상여, 인정배당, 지상배당,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 등

법인세법 98조(외국법인) :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따른 법인세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대상이므로 원천징수시 기재

② 신출지방소득세 : 합계(과세표준액) × 「지방세법」 표준세율

주)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사업연도	인원	사업장소재지 (도로명주소등)	강원도 산척시 (도로명주소):	읍·면·동	리	번지	사업장명	(단위 : 명, 원)		
								소득세 과표	소득세액	납부세액
월 별								산출세액 (지방소득세)	기 납부 내역 (지방소득세)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말 정산										
합 계										

※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복사하여 사용)

※ 서식 4.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삼척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① 종업원수 : 급여의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위임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의하여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하고, 수시 고용인용의 경우 월 연인원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산정

② 급여 총지금액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

③ 비과세 대상급여 :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

④ 산출세액 :
- 2015년 까지 :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㉔)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 2016년 부터 : 월 급여총액 1억 3,500만원(㉔)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㉔)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 반드시 연도별 결산사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 총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하여야 함.

4. 주민세(종업원분) 명세서(삼척시 소재 사업장)

< 사업연도 : , 사업장명 : > (단위 : 원)

월 별	인원	소득세 과표	산출세액 (주민세)	기 납부내역 (주민세)		비고
				납부세액	납부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 산출세액(주민세) 계산식 : 급여지금액 × (5/1,000)

삼척시 공고 제2019-366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이 철거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1. 공고장소 : 삼척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2. 공고기간 : 2019.04.16. ~ 2019.04.30. (15일간)
- 3. 말소(예정)일자 : 2019.05.01.
- 4. 공고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이옥○
	주소 (대장상주소)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자한 내용	건축물대장 말소 지번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887-1외1	
	목조 (1층:40.52㎡ 단독주택, 1층:29.09㎡ 단독주택)	
마.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 5. 유의 사항
-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부서(☎033-570-3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04. 16.

삼 척 시 장

삼척시 공고 제2019-367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이 철거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1. 공고장소 : 삼척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2. 공고기간 : 2019.04.16. ~ 2019.04.30. (15일간)
- 3. 말소(예정)일자 : 2019.05.01.
- 4. 공고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안월○
	주소 (대장상주소)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자한 내용	건축물대장 말소 지번 :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추동리 153	
	목조 (1층:60.5㎡ 단독주택)	
마.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 5. 유의 사항
-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부서(☎033-570-3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04. 16.

삼 척 시 장

[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 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2. 당사자	성 명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강원도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 관리부서
- 연 락 처 : 033)570-3965

삼척시 공고 제2019-373호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4월 17일
삼척시장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일부개정(2018.12.4.)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사항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취약계층 고용비용을 충족하는 사회적 기업 및 조합에 대해 감면조항 신설 (안 제32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 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 하는 경우 감면조항 신설 (안 제32조)
- 나. 개별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 반영
- 산지관리법에 맞지 않는 토석의 매각대금 산정방식 조항 삭제 (안 제30조)
 - 농지 매각 시 수익계약이 가능한 자를 관련법에 따라 농업인으로 변경 (안 제4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삼척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회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5914)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회계과
 - 전 화 : 033 - 570 - 3275
 - 팩 스 : 033 - 570 - 3135
 - E-mail : beombeom0617@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 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처분 또는 공유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처분”으로 한다.

제7조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법 제92조에 따른 공개는 시보 및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를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7조 중 “기부채납 일을 기준으로 하며 시장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를 “사용허가일을 기준으로 한다”로 한다.

제3장의 제목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공용면적의 비율을 30퍼센트로 적용 또는 산출산식”을 “산출산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빌딩경우”를 “빌딩의 경우”로, “(빌딩경우 해당층)을 “(빌딩의 경우 해당층)”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해당 부지면적”을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으로 한다.

제3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영 제17조제7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경 한다.

- 1. 영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 2. 제1호 외의 제26조의2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과 지역생산품의 생산·전시·판매시설을 위하여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 100분의 30
- ⑤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경한다.
 - 1. 영 제29조제1항제19호·제20호 또는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 2. 제26조의2에 따른 지역특산품과 지역생산품의 생산·전시·판매시설을 위하여 일반재산을 대부하려는 경우: 100분의 30

제32조제7항 중 “시장의 승인을 받아”를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로 한다.

제40조제8호 중 “경작하고 있는 자”를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56조제2호·제3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 3. 보일러 운영비
- 5. 전기요금
- 6. 전화요금
- 7. 수도요금
-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2. 부지의 공용면적 : 해당 부지면적 × [대부를 받는 건물면적(전용·공용 면적 합계)÷해당 부지내 건물의 연면적]	2. ----- 부지의 총 공용면적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③ (생략)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17조제6항·제7항 및 영 제35조제1항·제3항과 제26조의2에 따른 지역특산품과 지역생산품의 생산·전시·판매시설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④ 영 제17조제7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경한다. 1. 영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2. 제1호 외의 제26조의2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과 지역생산품의 생산·전시·판매시설을 위하여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 : 100분의 30
⑤ 영 제29조제1항제19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⑤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경한다. 1. 영 제29조제1항제19호·제20호 또는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2. 제26조의2에 따른 지역특산품과 지역생산품의 생산·전시·판매시설을 위하여 일반재산을 대부하려는 경우: 100분의 30

현행	개정안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⑦ 그 밖의 개별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면제 및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 업무부서의 요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부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⑦ -----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 -----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7. (생략)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 ----- ----- 1. ~ 7. (현행과 같음)
8.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 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할 수 있다.	8. -----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9. ~ 12. (생략)	9. ~ 12. (현행과 같음)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생략)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 ----- ----- ----- 1.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이나 2급 관사에 한정한다)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1급이나 2급 관사에 한정한다)	3. 보일러 운영비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전기요금(1급이나 2급 관사에 한정한다)	5. 전기요금
6. 전화요금(1급이나 2급 관사에 한정한다)	6. 전화요금
7. 수도요금(1급이나 2급 관사에 한정한다)	7. 수도요금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이나 2급 관사에 한정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조례명 :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소 :

○ 연락처 :

제정안	검토의견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공고 제 2019 - 379호

삼척시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 의 규정에 의거 수립중인 삼척시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15조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계획의 개요

- 계획명 :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수립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일원
- 규모 : 102개 노선(425.28km)
- 계획수립기관 : 삼척시

2.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목적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 공람기간 : 2019. 04. 19 ~ 05. 17 (20일간)(공휴일을 제외한 20일간)
- 공람장소 : 삼척시청(건설과), 6번(미로, 하장, 신기, 노곡, 근덕, 가곡) 사무소 2읍(도계, 원덕) 사무소

3. 주민설명회 개최

- 목적 : 삼척시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 일시 및 장소

일시	장소	비고
2019년 04월 29일(월) 14:00	삼척시청 시민회의장	본관 1층

4. 주민의견 제출

- 제출기간 : 공람시작일로부터 공람완료 후 7일간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의거 서면 제출

5.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건설과(☎033-570-34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노곡면 공고 제2019-3호

도로의 지정·공고

삼척시 노곡면 중마읍리 191-1번지 상에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 신청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하고자 합니다.

2019년 4월 16일

삼척시장

- 도로의 위치 : 삼척시 노곡면 중마읍리 191-1번지
- 도로의 현황 : 길이 2.3m, 너비 8.3m, 면적 19.0㎡
-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공부상 면적	제외 면적	지정 면적	
노곡면 중마읍리	195	전	134,188	134,169.0	19.0	국

삼척시 근덕면 공고 제2019-15호

도로의 지정·공고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 202번지 상에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 신청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하고자 합니다.

2019년 4월 19일

삼척시장

- 도로의 위치 :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 202-1번지 외 1필지
- 도로의 현황 : 길이 : 18m, 너비 : 4.0m, 면적 : 65m²
-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공부상 면적	제외 면적	지정 면적	
근덕면 궁촌리	202-1	대	6	0	6	삼척시 (건설과)
근덕면 궁촌리	202-2	대	59	0	59	삼척시 (건설과)